



제300회 임시회  
2011. 5. 12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-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5월 2일
-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
### 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)을 적용하여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각종위원회 수당지급대상 규정(제3조)
  - 도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
  - 도 의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 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

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 동기

-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)이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공무원·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관련

구 분	현 행	개 정
공무원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수당지급(소관업무이외의 위원 위촉시)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미지급(도 소속 공무원)
지방의회의원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수당지급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미지급(※개별법령제외)

○ 따라서,

-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.
- 지방의회의원인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의 참석수당 미지급  
※ 개별법령에 따라 지급 할 수도 있음.

#### 다. 검토의견

○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